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86
----------	------

2017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17년 8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라. 상정결과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서정협)

가. 제안이유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 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제명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로 변경
- (2)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의 조항에 ‘문화시민도시’ 개념

반영(안 제2조 ~ 제3조, 제5조)

- (3) 제2장의 명칭을 ‘시민의 문화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 제12조)
- (4)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5조 ~ 제24조)
- (5) 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 ~ 제31조)
- (6)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하게 중복된 조문 삭제
 - 미술작품의 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
- (7) 일부 규정의 삭제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2017.11.19.로 하되,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위하여 신설되는 조문들(안 제1장~제5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안 부칙 제1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 (2) 예산조치 : 협의완료
- (3) 협의사항
 - ①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조항 없음
 - ②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적정
 - ③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 ④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대상
 - ⑤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 ⑥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 없음
- (4) 기타
 -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옥)

-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는 2006년 7월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계획에 따라 제정되었고, 이후 2012년 12월에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와 통합하여 문화분야의 중장기 정책, 전문예술법인 지정과 육성, 지방문화원 육성, 축제 지원, 미술작품의 설치 등의 분야를 통괄하는 기본조례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음.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6년 6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정책’의 추진을 제고하고자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함.

또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권 및 문화영향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2017년 5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현행 조례와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비교하여 보면, 현행 조례가 총 11장, 39개의 조로 구성된 데 비해 개정조례안은 총 10장, 43개조로 구성되었음. 먼저 현행 조례 제2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은 개정조례안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으로 변경하면서 일부 조항이 신설되었고, 개정조례안 제5장 문화영향평가(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도 신설되었음. 또한 현행 조례 제9장 미술작품의 설치와 제10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삭제하면서, 최종적으로 15개 조가 신설되고, 11개 조가 삭제되었음.

〈표 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 대비표

구분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1장	총 칙	총 칙(개정)
2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시민의 문화권 보장(개정)
3장	문화도시정책의 추진체계	문화시민도시 정책의 수립(신설)
4장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개정)
5장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	문화영향평가(신설)
6장	지방문화원의 육성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기존 5장)
7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지방문화원의 육성(기존 6장)
8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문화예술축제의 육성(기존 7장)
9장	미술작품의 설치(삭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기존 8장)
10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삭제)	보 칙
11장	보 칙	

〈표 2〉 조항의 신설 및 삭제

삭제(현행 조례)	신설(전부개정조례안)
제8조(문화복지의 증진)	안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제10조(시민 문화의 정착)	안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30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안 제10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제31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안 제12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제32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안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33조(미술작품의 가격결정 등)	안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4조(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안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5조(기능)	안 제21조(분과위원회)
제36조(구성 및 임기)	안 제25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제37조(위원의 해촉)	안 제26조(문화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제38조(회의의 운영)	안 제27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안 제28조(문화영향평가의 방법)
	안 제29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안 제30조(문화영향평가의 결과 환류)
	안 제31조(재정의 지원)

- 변경되거나 신설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조례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로 ‘시민’이라는 수식어를 삽입한 바, 이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 수립한 정책비전의 ‘문화시민도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함.

〈표 3〉 문화도시 및 문화시민도시 비교표

계획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수립일	2006년		2016년	
비전	문화도시, 세계일류도시		문화시민도시, 시민행복도시	
목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	
방향	문화를 둘러싼 5개 분야별 계획		시민의 개개인의 삶을 둘러싼 문화계획	
관련조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안)	
제정	2006.07.19.		2017년(예정)	
기본방향	문화예술의 육성 문화복지 증진 시민문화의 정착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산업 육성	문화권 보장 시민문화활동 촉진 문화접근성 증진	문화다양성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협치
위원회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서울시 문화본부 제공(2017.8)

동 개정조례안의 전체 조문에 걸쳐 현행 조례의 ‘문화도시’를 ‘문화시민도시’로 변경하였는데, 타 시도 조례 중 “문화도시”를 제명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있어도 “문화시민도시”라는 용어를 제명에 사용한 경우는 없었음.

〈표 4〉 “문화도시” 제명 조례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2014.5.1.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2008.4.4.
3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2015.5.13.
4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2011.8.5.
5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2012.12.20.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이 ‘문화시민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 따라 바뀌는 정책기조에 의하여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개정의 서울의 문화정책 기조를 ‘시민’으로 한정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문화시민도시’는 ‘문화도시’ 정책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표 5〉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또한,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문화권”의 정의규정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바, 상위법명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조문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혼란이 적을 것이며, 안 제3조제

1항제3호 “문화영향평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위법명 기재와 조문 명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동 개정조례안 제2장 장 제목 “시민의 문화권 보장”의 경우, 현행 조례 제2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의 장 제목을 변경한 것인데, 조례 입법 기술 상 정책기조를 장 제목으로 정하면 정책기조의 변경에 따라 장 제목도 불필요하게 변경되어 조례의 안정성을 해치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원래 장 제목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6〉 개정조례안 제2장의 체계

구분	현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제목	제2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
	제6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6조 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신설)
	제7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7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신설)
	제8조 문화복지의 증진(삭제)	제8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9조 문화산업의 육성	제9조 문화산업의 육성
	제10조 시민문화의 정착(삭제)	제10조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신설)
		제11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12조 문화협치 기반마련(신설)

- 안 제10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은 현행 조례 제7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조문에 포함된 ‘역사적 문화유산 보전·복원’ 의무를 조항으로 신설한 것인데, 이는 2016년 수립된 <역사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을 변경하고, 안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안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21조(분과위원회)는 2016년 7월 수립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신설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동 개정조례안이 검토되면서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은 문화본부에 '개선권고'를 통보한 바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에 따른 것이며 안 제16조제3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여 조치하였음.

〈표 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 14조(실태조사)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u>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안 제16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3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은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본부

단위 부처의 기본계획 관련 위원회의 경우, 현재 30명 이상 150명 이내에서 구성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은 특별히 과한 인원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표 8〉 서울특별시 위원회

구분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회 구성 기준
1	건축기획과	건축위원회	25명 이상 150명 이내
2	도시공간개선반	건축정책위원회	30명 이내
3	환경정책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00명 이내
4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시민위원회	45명 이내
5	버스정책과	버스정책시민위원회	50명 이내
6	여성정책과	성평등위원회	40명 이내

안 제21조(분과위원회)의 경우,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이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행정 분야로 나뉘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각 분과위원회에 적용한 것임.

- 동 개정조례안 제5장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울시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문화영향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것임.

〈표 9〉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으로 정하고 있는데, ① 국가적 차원 또는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중요도가 큰 정책, ②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시설조성사업, ③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또는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④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정책 및 계획, ⑤ 문화적 요소와의 결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거나, 문화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획 및 정책 등을 예시¹⁾로 들고 있음.

서울시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두 영향평가 모두 계량적인 변수를 설정하여 수치에 의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평가모델을 수립하고 있으나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전통적으로 변수 설정자체가 난해하고 가

1)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대상 : 국토교통부 도시재상사업(제주시, 경북 안동시,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농림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농림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경기도, 경기도 신청사 건립(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문화재청),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제주도), 고양 삼송지구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및 운영사업(교육부), 경기청년 협업마을 조성·운영사업(경기 시흥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인천시)

변적이어서 수치 측정은 가능하나 정확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2016년 문화사회연구소의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서울 문화영향평가 평가모델²⁾의 경우도 평가방법이 체크리스트 및 지수를 활용한 경우여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다는 장점만 있을 뿐 수치를 활용한 정확한 측정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종적으로 산출된 측정치가 검증하려고 하는 계획과 정책의 객관적인 가부(可否)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갖는지 주관적인 평가만 가능하므로 향후 평가모델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³⁾.

- 현행 조례 제9장 미술작품의 설치 및 제10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2017년 5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해당 내용을 갈음하고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되었음. 다만 상기 조례가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바, 동 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할 경우 행정공백이 예상되어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11월 19일로 유보하였음.

2) <첨부 : 서울 문화영향평가 평가모델> 참고. 서울시는 서울 문화영향평가를 문화기본권(향수권, 참여권, 경관·환경권, 기반조성)과 문화다양성(시민다양성, 차이수용성, 정체성, 예술다양성) 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정하였음.

3) 서울시 문화본부는 서울 문화영향평가 평가모델을 통해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을 시뮬레이팅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재생사업의 가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고,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기본권과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어떠한 문화적 성격이 높은 점수를 보였는지에 대한 판단만을 내렸음.

- 기타 조문의 변경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016)』에 따라 띄어쓰기, 단어 변경 등의 자구 수정이며,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제1조(시행일), 제2조(준속기한), 제3조(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폐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 제1조(시행일)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17년 11월 19일로 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이 11월 19일이므로 행정공백이 예상되어 정한 조치임.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문화영향평가까지의 개정규정과 부칙 안 제2조 및 제3조의 위원회 관련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의 경우, 금번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 예정인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조례명과 위원회 명칭이 상기 조례안 제8조제2항에 포함되어 있어,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되어야 할 것임.

〈표 10〉 수정의견 종합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서울특별시 <u>문화도시</u>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u>문화시민도시</u> 기본조례	(현행과 같음)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u>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u>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u>문화시민도시</u>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문화도시</u>로 ----- ----- ----- ----- ----- ----- ----- ----- ----- ----- -----.</p>
<p>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실현하여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문화시민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문화도시”란 ----- ----- ----- ----- ----- -----.</p>
<p>가.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p>나.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p>다.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p>라.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p>마.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문화의 정착</p>	<p>〈삭 제〉</p>	<p>(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p>2. “문화예술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p>	<p>2. “문화권”이란 성,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p>
<p>3. “지방문화원”이라 함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p>	<p>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4.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p>	<p>4.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5. “문화예술축제”란 시,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p>	<p>5. (개정안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다른 <u>법규</u>와의 관계) <u>문화</u></p>	<p>제4조(다른 <u>조례</u>와의 관계) <u>문화</u></p>	<p>제4조(다른 <u>조례</u>와의 관계) <u>문화</u></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시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시민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도시</u> ----- ----- ----- -----.</p>
제2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	제2장 (현행과 같음)
제3장 문화도시정책의 추진체계	제3장 문화시민도시 정책의 수립	제3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11조(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p>① 시장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p>	<p>① 시장은 문화시민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p>	<p>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 ----- ----- -----.</p>
<p>②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할 수 있고,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신 설>	<p>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개정안과 같음)</p>
제13조(목적 및 기능) ①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및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문화도시 -----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 ----- -----.
② 자문위원회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자문 및 사업제안	1. 시의 <u>문화시민도시</u>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 시의 <u>문화도시</u> ----- ----- -----
2. 문화도시 및 예술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자문	2. <u>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u> 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4. (개정안과 같음)
3. 제25조 규정에 따른 축제의 운영(신설 및 폐지, 시기의 변경 및 개최 등)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민간축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심의 및 자문	3. <u>문화영향평가</u> 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u>시민제안사업</u> 검토	
<신설>	5. <u>문화원탁회의</u> 개최에 관한 사항	5. <u>문화원탁회의, 포럼</u>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신설>	6. 그 밖에 <u>문화시민도시</u>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u>문화도시</u> ----- ----- -----
<신설>	③ 위원회는 시의 <u>문화시민도시</u>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	③ 위원회는 시의 <u>문화도시</u> -----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p data-bbox="304 439 427 472">〈신 설〉</p> <p data-bbox="451 521 572 555">〈신 설〉</p>	<p data-bbox="608 259 999 342">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p> <p data-bbox="756 439 823 472">부 칙</p> <p data-bbox="608 521 999 792">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p> <p data-bbox="608 857 999 1128">②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8조”로 한다.</p> <p data-bbox="608 1193 999 1554">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p> <p data-bbox="608 1619 999 1890">④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p> <p data-bbox="874 1955 999 1989">〈신 설〉</p>	<p data-bbox="1031 259 1422 342">----- -----.</p> <p data-bbox="1115 439 1310 472">(개정안과 같음)</p> <p data-bbox="1031 521 1422 604">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개정안과 같음)</p> <p data-bbox="1031 857 1422 1128">② ----- -----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p> <p data-bbox="1031 1193 1422 1554">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p> <p data-bbox="1031 1619 1422 1890">④ ----- -----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p> <p data-bbox="1031 1955 1422 2038">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p>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⑤ 서울특별시조례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 를 삭제한다.</p>	<p>“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한다.</p> <p>⑥ (개정안과 같음)</p>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의 제명 및 조문의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다시 변경함. 이는 현행 조례가 서울시 문화본부의 정책 근간이 되는 기본조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시민’이라는 수식어가 자칫 문화정책을 한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임.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및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은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을 반영하여 그대로 두었음.

나. 수정 주요골자

- 제명 및 조문의 “문화시민도시”를 현행 “문화도시”로 변경함.
- 조례 용어 중 “문화권” 및 “문화영향평가” 정의 규정의 정교한 기술을 위해 각 상위법의 조문을 따르도록 수정함(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안 부칙 삽입(안 부칙 제4조제5항)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86
----------	------------

제안연월일 : 2017년 8월 31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가 서울시 문화본부의 정책 근간이 되는 기본조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시민’이라는 수식어가 자칫 문화정책을 한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의 제명 및 조문의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다시 변경함.

2. 주요골자

- 제명 및 조문의 “문화시민도시”를 현행 “문화도시”로 변경함.
- 조례 용어 중 “문화권” 및 “문화영향평가” 정의 규정의 정교한 기술을 위해 각 상위법의 조문을 따르도록 수정함(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안 부칙 삽입(안 부칙 제4조제5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중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한다.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제1호, 안 제4조 중 “문화시민도시”를 각각 “문화도시”로 한다.

안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안 제3조제1항제3호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를 “「문화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로 한다.

안 제3장의 제목 중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제2항제1호, 제6호 중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하고, 제5호 중 “문화원탁회의”를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한다.

안 부칙 제4조제2항, 제3항, 제4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로 한다.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u>문화시민도시</u>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u>문화도시</u>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u>문화시민도시</u> 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문화도시</u> 로 ----- ----- ----- ----- ----- ----- ----- -----.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문화시민도시</u> "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 <u>문화권</u> "이란 성,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 <u>문화영향평가</u> "란 <u>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u>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문화도시</u> "란 ----- ----- ----- -----. 2. " <u>문화권</u> "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 <u>문화영향평가</u> "란 「문화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u>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u>

개 정 안	수 정 안
<p>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4.~5.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문화시민도시</u>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장 <u>문화시민도시</u>정책의 수립</p> <p>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p> <p>① 시장은 <u>문화시민도시</u>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p> <p>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4.~5.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문화도시</u> ----- ----- -----.</p> <p>제3장 <u>문화도시</u>정책의 수립</p> <p>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p> <p>① 시장은 <u>문화도시</u>를 ----- ----- -----.</p> <p>② ~ ③ (개정안과 같음)</p>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u>문화시민도시</u>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1. 시의 <u>문화시민도시</u>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p> <p>2.~4. (생략)</p> <p>5. <u>문화원탁회의</u> 개최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u>문화시민도시</u>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위원회는 시의 <u>문화시민도시</u>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p>	<p>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u>문화도시</u>----- ----- -----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시의 <u>문화도시</u> ----- ----- -----</p> <p>2.~4. (개정안과 같음)</p> <p>5. <u>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u> 개최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u>문화도시</u> ----- ----- -----</p> <p>③ 위원회는 시의 <u>문화도시</u> ----- -----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개정안과 같음)</p>

개 정 안	수 정 안
<p>②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를 “<u>「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u> 제8조”로 한다.</p> <p>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을 “<u>「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u>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p> <p>④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u>「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u>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⑤ (생략)</p>	<p>② ----- ----- ----- “<u>「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u> 제8조”로 한다.</p> <p>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을 “<u>「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u>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p> <p>④ ----- -----</p> <p>5. <u>「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u>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p> <p>⑤ <u>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u>를 “<u>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u>”로 한다.</p> <p>⑥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문화예술축제”란 시,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써 시민화합 및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개인·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

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를 형성해 온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고,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도시 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12조(문화협치 기반마련)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3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계획에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 반영

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책 평가와 의견수렴) ①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제안사업 검토
5.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

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전에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전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자문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분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④ 분과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획위원회를 둔다.

제22조(관계기관의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문화영향평가

제25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확산하기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가운데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
2.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8조(문화영향평가의 방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적용 가능한 방법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수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문화영향평가 결과 환류)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부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문, 교육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과 육성

제3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단체
2.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사회적 기여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있는 사람
- ⑤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취소)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과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과 육성)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지방문화원의 육성

제35조(지방문화원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문화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2. 지방문화원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36조(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8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제37조(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문화예술축제의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시장은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문화예술축제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문화예술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축제 시책·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제40조에 따른 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수탁자 또는 대행자가 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

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예술축제의 계획수립 및 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4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10장 보칙

제4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2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으로,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 종합계획

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문화도시 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조례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